

문 의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과 장 신상곤 주무관 홍재경	042-481-8321 042-481-346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8년 6월 4일(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6월 3일(일)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 특허제도를 쉽게 안내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

- 「'18년 전국순회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개최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 사항 및 특허침해 규정 정비 방안 등을 안내하는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는 특허청 전문가가 서울, 광주, 대전, 부산을 차례로 찾아가 개정된 특허제도와 함께 상표 및 디자인 제도를 현장에서 소개하는 한편,
-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 설명회는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6.5. 10시, 14시), 광주시청(6.12. 14시), 대전 통계교육센터(6.15. 14시), 부산테크노파크(6.22. 14시)에서 개최되며,
-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5일 서울을 시작으로 개최되는 「특허제도 통합설명회」에서는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진보성 판단기준 정비 등 특허심사기준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분류체계 수립과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선심사제도 등을 안내한다.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 아울러, 3D 프린팅 데이터 등 디지털 수단에 의한 침해유발 행위로부터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간접침해 규정을 개정하는 특허침해 규정 정비 방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또한,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 및 PCT 협력심사(CS&E) 시행 등을 포함한 국제 특허심사 협력사업 소개를 통해, 출원인이 관련 제도를 손쉽게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 더불어 국선대리인, 심판-조정연계 등 심판제도 개선 추진사항과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도 함께 안내한다.

□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특허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개선된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붙임 : '18년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개최 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와 주무관 홍재경(☎ 042-481-34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정

지 역	일 시	장 소
서 울	'18. 06. 05.(화) 10:00~12:00	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 2
	'18. 06. 05.(화) 14:00~16:00	
광 주	'18. 06. 12.(화) 14:00~16:00	광주광역시청 1층 회의실
대 전	'18. 06. 15.(금) 14:00~16:00	통계교육센터 본관 3층 1강의실
부 산	'18. 06. 22.(금) 14:00~16:00	부산테크노파크 114호 회의실

□ 발표 주제

발표 주제	시간	담당 부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	25분	특허심사제도과
침해규정 정비 방안	15분	
국제특허심사 협력사업 소개	15분	
특허심판제도 개선 방향 (전문심리위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등)	15분	심판정책과
상표 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	15분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15분	디자인심사정책과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20분	-

○ 발표 주제별 세부내용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내용)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진보성 판단기준 정비 및 우선심사 기준 신설,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심사기준 정비 등
- (침해규정 정비 방안) 3D 프린팅 데이터 등 디지털 수단에 의한 침해유발 행위로부터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간접침해 규정 개정 추진
- (국제 특허심사 협력사업 소개)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 소개, PCT 협력심사(CS&E) 시행 안내 등
- (특허심판제도 개선 방향) 국선대리인, 전문심리위원, 적시제출주의, 심판-조정연계 등 심판제도 개선 추진 사항
- (상표심사기준 개정내용) 입체상표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식별력 판단기준 개선, 설정등록료를 미납한 선출원상표 인용 상표출원의 심사처리 개선 등
-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 디자인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DAS)제도 도입, 신규성상실 예외주장기간의 연장 등